

제 호

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

명 칭:

소재지:

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
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위험물 안전관리자
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